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4. 1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8년 4월 6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 4.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진정래)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주택분)의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하도록, 일시 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확대.(안 제9조)

(10만 원 이하 → 20만 원 이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9조(납기)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하도록,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 개정하였음.
- 검토 결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한 해 두 번(7·9월) 부과함에 따라 이중과세 오해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8 호
----------	---------

제출연월일 : 2018.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주택분)의 일시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하도록, 일시부과 가능 세액범위를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8.2.1. ~ 2.21.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납기) ----- ----- ----- 20만원 ----- ----- ----- -----.